# 서울특별시 노인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 지원 조례안

(곽향기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 445 발 의 년 월 일:2023년 01월 31일 발 의 자:곽향기 의원(1명) 찬 성 자:갓석주 고광민 구

자: 강석주, 고광민, 구미경, 김경훈, 김규남, 김길영. 김동욱, 김영옥, 김영철, 김용일. 김용호. 김원중. 김재진, 김지향, 김춘곤, 김형재, 김혜영, 김혜지, 남궁역, 남창진. 문성호. 민병주. 박상혁. 박성연. 박영한, 박춘선, 박칠성, 박환희. 서준오. 소영철. 송경택. 신동원, 신복자, 아이수루, 옥재은, 유만희 , 유정인, 유정희, 윤기섭, 윤종복, 이경숙, 이병윤, 이봉준. 이상욱. 이성배. 이영실. 이용균. 이종배. 이종태. 이효원. 이희원. 장태용, 정준호, 정지웅, 채수지, 최민규, 최유희, 최진혁, 허 훈, 홍국표, 황유정 의원(61명)

## 1. 제안이유

- 스마트 기기를 보유한 65세 이상 노인 인구수 증가 및 비대면 생활 확장으로 인한 무인단말기의 보편화 등 노인의 스마트 기기 이용이 생활화되고 있음.
- 이에 노인에 대한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을 지원하여 노인의 디지털 사용 소외를 해소하고 일생생활에서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.

### 2. 주요내용

- 나. 노인 스마트 기기 교육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4조)
- 다. 노인 스마트 기기 교육에 관한 사업 시행 사항을 규정함(안 제5조)
- 라. 노인 스마트 기기 교육에 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(안 제6조)
- 마. 노인 스마트 기기 교육에 관한 실태조사 사항을 규정함(안 제7)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지능정보화 기본법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

# 서울특별시 노인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 지원 조례안
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노인에 대한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정보화 사회 적응을 돕고 정보격차를 해소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  - 1. "노인"이란 서울특별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.
  - 2. "스마트 기기"란 기능이 제한되지 않아 응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상당 부분의 기능을 변경하거나 확장할 수 있는 제품으로 컴퓨터, 스마트폰, 무인 정보 단말기 등의 디지털 기기를 말한다.
- 제3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이 조례는 노인에 대한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.
- 제4조(노인 스마트 기기 교육 지원계획의 수립) ① 서울특별시장(이하 "시 장"이라 한다)은 노인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 지원 계획(이하 "지원계획" 이라 한다)을 3년마다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  -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  - 1. 노인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의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
  - 2. 노인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

- 3. 노인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을 위한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
- 4. 노인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 지원을 위한 자치구 협력 체계 방안
- 5. 그 밖에 노인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제5조(사업)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.
  - 1. 노인 스마트 기기 활용에 관한 교육·홍보·안내·지원 등에 관한 사업
  - 2. 노인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을 위한 강사 양성에 관한 사업
  - 3. 그 밖에 노인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  - ② 시장은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1 항에 따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비영리 법인 및 기관·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- 제6조(지원)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자치구, 관련 비영리 법인 및 기관·단체 등에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- 제7조(실태조사)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및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노인 인구의 스마트 기기 보급률, 활용 능력, 교육현황 등에 대한 연구 또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  -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·단체 및 법인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- 제8조(협력체계 구축) 시장은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

앙행정기관, 자치구, 관련 기관·단체 및 법인과 협력하여야 한다. 제9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문서번호

2023011100000004

# 미첨부사유서(1호)

요청인: 곽향기의원

담 당: 오희선 과장

이정수 팀장

선동규 주무관

접 수 일: 2023.01.11.

회 신 일: 2023.01.17.

내용문의 : 02-2180-7953

서울특별시 노인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목 차

- 1. 비용발생 요인
- 2. 미첨부 근거 규정
- 3. 미첨부 사유
- 4. 작성자



#### 1. 비용발생 요인

- 서울특별시 노인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 지원 조례안 제7조(실태조사) 규정에 따라 실태조사 관련 비용발생
- ※ 같은 조례안 제4조(노인 스마트 기기 교육 지원계획의 수립), 제8조(협력 체계 구축) 규정은 관련 사업 진행시 재정수입 순감소나 재정지출 순증가 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
- ※ 같은 조례안 제5조(사업), 제6조(지원) 규정은 관련 부서 확인 결과 소관 부서가 정해지지 않아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없어 비용 추계 어려움

###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제3조제2항

#### 3. 미첨부 사유

가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인 경우(제3조제1항제1호)

○ 서울특별시 노인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 지원 조례안 제7조(실태조사) 규정에 따른 비용

#### 나. 추계의 전제

- 안 제7조의 실태조사는 안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에 따른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
- 비용은 2024년부터 발생하고 추계기간(2024~2028년) 이후에도 계속 발생
- 물가상승률 미반영

#### 다. 추계결과

○ 총비용(합계) = 75,000천원(연평균 15,000천원)

(단위: 천원)

	000						Economic Date (Ann
구분	연도	2024	2025	2026	2027	2028	계
세입	_	<u>~</u>	12	_	) <u>-</u>	_	
	소계(a)	=	-	-	· <del>-</del>	8 <del></del>	<del></del> .
세출	실태조사(안 제7조)	15,000	15,000	15,000	15,000	15,000	75,000
	소계(b)	15,000	15,000	15,000	15,000	15,000	75,000
□ 총 비용(b-a)		15,000	15,000	15,000	15,000	15,000	75,000

#### 라. 비용추계 상세내역

- 지원계획의 수립 등에 따른 실태조사 용역 비용 ≒ 75,000천원
  - 산출방식 =  $\sum_{i=1}^{5} ( 실태조사 용역비) i$ 
    - ※ i = 비용추계 연차(2024~2028)
  - 실태조사 용역 비용 = 75,000천원
    - = (연간 실태조사 용역비) × (5년)
    - = 15,000천원 × 5회
      - ※ 참조 : 2022년 시민공익활동 실태조사 용역 15,000천원
    - = 75,000천원

#### 4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

담 당 관 오희선

추계세제팀장 이정수

주 무 관 선동규

**2** 02-2180-7953

e-mail: abasiclife@seoul.go.kr